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14. 4. 1.

제안자 : 행정건설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옴부즈만의 위촉 자격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맞게 바꿈으로써  
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

## 2. 수정내용

“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옴부즈만으로 활동한  
경험이 있는 사람”을 “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”으로 함.  
(안 제3조제3항제5호)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3항제5호 중 “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옴부즈만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”을 “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”으로 한다.

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3조(옴부즈만 구성 등) ① ~② (생 략)</p> <p>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.</p> <p>1 ~ 4. (생 략)</p> <p>5.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<u>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옴부즈만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</u></p> <p>④ ~ ⑤ (생 략)</p>	<p>제3조(옴부즈만 구성 등) ① ~② (원안과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 ~ 4. (원안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<u>시민사회단체</u> <u>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</u></p> <p>④ ~ ⑤ (원안과 같음)</p>